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매크로 이용 무관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등 >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73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매크로 이용 무관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수영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4. 10. 11.
3. 회 부 일: 2024. 10.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기간 침체했던 체육업계가 최근 관람객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인기 스포츠 경기를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가 온·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 같은 부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정판매 수익의 몰수·추징 및 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매크로 이용 무관 입장권등 부정판매 금지 등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 판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정 판매 기준가격을 ‘구입가격’→‘판매정가’로 변경하고, 부정판매 신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제49조제1호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 ----- ----- ----- ----- <u>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u> ----- ----- ----- -----.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2. (생 략)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생 략)

② -----입장권등-----
-----.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49조의2(벌칙)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생략)	제51조(몰수·추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경범죄 처벌법」¹⁾에 따르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한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4. 3. 26.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법률 제20413호, 2024. 9. 27. 시행)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²⁾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고, 부정판매가 심각해짐에 따라 부정판매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판매를 통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정판매 기준가격을 ‘구입가격’→‘판매정가’로 변경하고, 부정판매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 내용

	현 행 법	개 정 안
금지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제6조의2제2항)	방법 무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제6조의2제2항)
		기준가격 변경: ‘구입가격’→‘판매정가’ (제6조의2제1항)
벌칙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제1호)
		부당이득 몰수·추징 (제51조제4항)
절차	-	‘신고기관’ 지정 (제6조의3)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다량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자들도 제재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기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철도사업법」 등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부정판매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신고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표] 암표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금지 행위	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경기장 등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타인에게 재판매 (제3조제2항제4호)	16만원 이하 벌금 (제3조제2항제4호)
철도 사업법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10조의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1조제1항제4호)
평창 올림픽법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넘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제25조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2조 제1항)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4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1조 제1호)
체육 시설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21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제2항제1호의2)
국민체육 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6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다만,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부정판매자 처벌규정 시행(2024. 2. 9.)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처벌대상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³⁾.

한편, 신고기관 지정(안 제6조의3)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관리·처벌을 위해서는 입장권등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 중개사업자 등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권한과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⁴⁾.

3) 문체부는 현장 암표매매를 「경범죄처벌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암표매매만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체부 수정안> 제21조의2제2항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서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문체부 수정안]

개 정 안	정부 수정안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입장권등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① (개정안과 동일) ② (개정안과 동일)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입장권등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등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② (개정안과 같음)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신 설>

1.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표] 부정판매 금지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구분	이춘석 의원 (2942)	강유정 의원 (3804)	조계원 의원 (4600)	박수영 의원 (4673)	민형배 의원 (4785)								
금지 행위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제6조의2제2항)	-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제6조의2제2항)										
	-		-	기준가격 변경 (‘구입한 가격’ →‘판매 정가’) (제6조의2제1항)	-								
처벌	이득액에 따른 처벌 차등 (제49조제1호, 제49조의2제1호, 제55조제2항제1호)	-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제1호)		-								
	<table border="1"> <tr> <th>부당 이득액</th> <th>처벌</th> </tr> <tr> <td>500 만원 이하</td> <td>500만원 이하 과태료</td> </tr> <tr> <td>500~ 1,000 만원 미만</td> <td>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td> </tr> <tr> <td>1,000 만원 이상</td> <td>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td> </tr> </table>		부당 이득액	처벌		500 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 1,000 만원 미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000 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제51조제4항)	
	부당 이득액		처벌										
	500 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과태료										
	500~ 1,000 만원 미만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1,000 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기타	-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의무화 (제6조의2제3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5조제1항제1호)	-	‘신고기관’ 지정 (제6조의3)	부정판매 확인 방법·절차 등 ‘부령’ 위임 (제6조의2제3항)								

[표] 부정판매 금지 관련 「공연법」 개정안 발의 현황

이춘석 의원안 (2928)	강유정 의원안 (3799)	조계원 의원안 (4576)	박수영 의원안 (4674)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 (온오프라인)	
이득액에 따른 처벌 차등	-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부당이득액 몰수·추징(신설)	
-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기술적·물리적 조치 등 의무화,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기준가격 변경 (‘구입한 가격’ →‘판매 정가’),
			‘신고기관’ 지정

[표] 부정판매 금지 관련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현황

조계원 의원안 (4615)
매크로 무관 부정판매 금지(온오프라인)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 1]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운영 현황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감시·조치 현황]

(단위: 건, %)

연도	감시 건수			조치 건수			조치율 (B/A)
	신고접수	모니터링	계(A)	예매취소	경고문 발송	합계(B)	
'20년	1,607	4,630	6,237	366	129	495	7.9
'21년	1,423	16,999	18,422	207	473	680	3.7
'22년	7,829	28,994	36,823	151	670	821	2.2
'23년	14,728	37,223	51,915	80	1,214	1,294	2.5
'24년(9월말)	6,798	54,032	60,830	12	1,622	1,634	2.7

* 신고접수: 암표신고 통합사이트에 접수된 신고 건수

** 모니터링: 신고센터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 인지한 암표 의심 사례 건수

*** 예매취소: 실제 예매취소된 건수

**** 직권취소 시 개인 간 거래 규제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 이미 개인간 거래가 완료된 건의 경우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경기를 보지 못하는 피해 발생 등의 우려를 고려하여, 경고문 발송 시 자진취소 유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운영 방식]

구분	내용
운영인력	3명 (신고접수·모니터링 2명, 기획·홍보 1명)
운영시간	• (신고접수) 온라인 상시 접수 • (모니터링) 09:00-18:00, 연중 무휴, 2인 교대근무
신고대상 경기	프로단체 및 구단 주최·주관 경기 (K리그, KBO, KBL, WKBL, KOVO 정규리그, 포스트시즌, 올스타전 등)
신고대상 사이트	•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 중고나라, 티켓베이, 번개장터, 당근 등 • (소셜미디어 채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신고 플랫폼	공연 및 스포츠 암표신고 통합 사이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 신고센터 업무 절차]

업무절차	업무내용	관리주체	수행주체
① 신고접수&모니터링	- 온라인 신고센터 통해 신고건 접수 - 모니터링 요원이 중고나라 • 당근마켓 • 번개장터 • 티켓베이 • 트위터 등에서 거래되는 암표 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② 결과공유	- 일일 신고접수&모니터링 확인 - 좌석 확인 건에 한하여 티켓사에 정보 전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 티켓사) * 일 1회 15:30 보고 및 전달		
③ 좌석확인&고객정보조회	- 좌석 확인 티켓 고객예매 정보 조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 티켓사)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티켓사 (인터파크, 티켓링크)
④ 경고문 발송	- 암표 의심 티켓 판매자에 경고문 발송		
⑤ 결과 송부	- 경고문 발송, 확인 불가, 자진 취소 등 처리 결과 전달(티켓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